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

1. 제안이유

- 지역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문화의 집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문화의 집 사업 범위 규정(안 제4조)

나. 문화의 집 운영규정

- 구 직영운영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운영 가능(안 제5조제1항)
- 위탁 운영 시 광주광역시서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 따른다(안 제5조제2항)

다. 문화의 집 예산지원 :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 지원 가능(안 제6조)

라.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은 9인으로 함(안 제7조)

마. 문화의 집 사용 신청(안 제12조)

바. 문화의 집 사용시간 및 휴무(안 제15조)

○ 사용시간

-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안 제15조제1항제1호)

-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말까지 :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일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안 제15조제1항제2호)

※ 단, 독서실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안 제16조제1항)

○ 휴무일 :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과 매주 월요일(안 제15조제2항)

3. 검토의견

이 제정조례안은 구민의 문화체험·교육기회 확대 및 능동적 문화활동과 참여를 제고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전문 16조와 부칙으로 된 이 제정조례안의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30-11번지에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을 설치하고 문화의 집이 수행할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안 제2조, 안 제4조), 그 운영은 구 직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안 제5조), 위탁운영의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안 제6조),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문화의집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문화의집 운영과 프로그램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고 있으며(안 제7조), 그밖에 문화의집 사용 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11조)과 사용시간 및 휴무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서구농성문화의집운영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제9조(운영요원)
제2조(명칭 및 위치)	제10조(시설 및 자료 사용)
제3조(시설)	제11조(사용자의 책임)
제4조(사업)	제12조(사용신청)
제5조(운영)	제13조(손해배상책임)
제6조(보조금)	제14조(준수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15조(준용)
제8조(수당, 여비 등)	제16조(시행규칙)

부칙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다음은 규정내용상의 문제점과 미비점 등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첫째,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 수에 대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안 제7조제2항에서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안 동조제3항에서는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2명,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및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7명 이내로 구성장이 위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위원회 위원 정수에 있어 양 규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즉 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라 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의 탄력성 등을 감안한다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측면에서 안 제7조제2항 중 “9인”을 “9인 이내”로 수정해야 할 것이고, 다만 용어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측면에서 안 동조제3항 중 “2명”을 “2인”으로 하고 “7명”을 “7인”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위원·위원장의 임기에 대한 의견입니다.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경우 그 구성원인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인 규정사항이라 하겠으나 본 제정조례안에는 위원과 위원장의 임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다만 본 제정조례안도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의 적용을 받게된다는 점에서, 임기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어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다고 하겠으나, 위원회 구성원인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은 기본적인 규정사항이라 점에서 본 제정조례안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하겠습니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정조례안	수정 의견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생략)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제정조례안과 같음)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u>9인</u> 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② ----- <u>9인 이내</u> ----- -----
제정조례안	수정 의견
③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u>2명</u> ,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및 주민대표 등을 포함한 민간인 <u>7명</u> 이내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 <u>2인</u> ----- ----- ----- <u>7인</u> ----- -----
(신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신설)	⑤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생략)	⑥(제정조례안 제4항과 같음)
⑤(생략)	⑦(제정조례안 제5항과 같음)

광주광역시서구각종위원회구성과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적용)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한 위원회
2.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위원회

제3조(위원회구성 등) ①위원회 위원은 광주광역시서구의회의원을 제외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고, 전문가를 위촉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의 수는 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여성위원의 위촉은 당해 위원회 위촉위원의 3분의 1이상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위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④위원 위촉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 위원이 3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부위원장) ①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주재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위원과 같다. 다만, 보임의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사용자의 책임에 대한 의견입니다.

사용자의 책임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제1항에서 사용자에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제2항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용자에게 대한 원상복구책임과 변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선관주의)라 함은 그 사람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보통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명문의 규정여부와 관계없이 민법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안 제11조는 민법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선관주의(제1항)와 선관주의에 위반한 그 책임에 관한 사항(제2항)을 규정하고 있는 듯 하지만, 내용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위반에 따른 책임이어야 하겠습니다.

제2항에서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 책임의 요건으로서 시설물 사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실이란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인식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하여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실은 부주의의 정도에 따라 경과실과 중과실(중대한 과실)로 나누어 지는데, 경과실이란 다소라도 주의를 결한 경우이고, 중과실이란 현저하게 주의를 결한 경우(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의 과실)로서, 즉 조금만 주의하였더라면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태만한 경우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과실은 경과실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 경우의 주의란 일반적으로 평균인에게 요구되는 주의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또는 선관주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합리적인 법률인을 그 대상으로 하는 민법에서 있어서 주의를 선관주의가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민법상 불법행위의 책임요건으로서는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문화의집 사용자의 법률관계(문화의집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도 구청과 사용자간의 계약에 따른 것이며 본질적으로는 사법상의 계약관계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용자의 불법행위의 책임은 사법상의 일반불법행위 책임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보면, 제1항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서 그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 요건으로 제2항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법리상 모순이라 생각하며 제2항 중 “중대한 과실”은 “과실”로 수정되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의견 조문 대비표

제정조례안	수정 의견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생략)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제정조례안과 같음)
②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u>중대한 과실</u> 로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입힌 사람은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② ----- <u>과실</u> ----- -----